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